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기각)

□ 민원 제목 : 공유재산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취소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동 △△△번지 상가 건물 소유주로 인근 ■■■■■ 방문객들이 상가 건물과 인접한 토지(○○동 ▲▲▲번지)에 차량을 주차하며 생기는 흙먼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해당 필지의 잡초를 뽑고,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아스콘을 포장하여 정비하였음.
-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필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상가가 부지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도 있으나 남양주시 ○○○○과에서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였다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와는 상반되게 원상복구를 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한 적이 없는 사함을 고려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하여 주길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동 ▲▲▲번지는 남양주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강변북로 도로 부지(도로법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행정재산)임.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전 같은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09년도에 ○○동 △△△번지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지하 1층, 지상2층)을 신축하면서 ▲▲▲번지의 가드레일을 절단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상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은 ○○동 ▲▲▲번지의 주차장이 시민의 편의성을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신청인 소유의 상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이 행정재산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뒤, 타인의 출입을 막은 적이 없으니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민원인의 주장 하나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을 훼손한 것을 묵인한다면 동일사례 발생 시 행정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동 ▲▲▲번지 토지는 신청인의 부친 정□□의 소유이고, 해당 토지 지상에는 신청인이 2009년경 지상 2층, 지하 1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신청인의 부친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이후 건축물 앞에 위치한 ○○동 △△△번지 토지(도로)를 건물 이용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잡초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2020. 12. 4.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을 포장하였음.
-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가 있고 그 일대에 음식점, 카페 등 상가가 다수 존재하며, 상가와 인접하여 ◇◇◇체육공원과 4000㎡ 규모의 공원주차장이 있음.
-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차선은 없고, 펜스나 출입구 등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은 없음.

□ 관계 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판단 및 결론

-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부과처분”은 요건이나 대상 및 각각의 성격도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이 경행심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재결”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에, 신청인의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취소 요청’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각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누락에 따른 소급 지급 요청

□ 신청 취지

- 11.07.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일부 조례 개정으로 인해 22년 1월부터 만65세 미만인 자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면에서의 공문 안내 누락으로 이를 안내받지 못한 사실과 현재로서는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
-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훈명예수당(매월 3만원)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 받지 못한 10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수당 지급기간 및 시기)제1항에 따르면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안내를 바로 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당시 담당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더라도 소급 지급은 조례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됨.

□ 사실관계

- 2021.07.01. 신설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제3항에 따라 ○○ ○○과에서 2021.07.14.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계획 수립.

- 2021.12.23. ○○○○과에서 ‘만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안내 요청’ 공문을 각 읍면동으로 발송하였으며, △△면에서는 2021.12.23. 16:24 문서를 접수하였으나 대상자에게 안내 공문을 보내지 않음.
- 2022.10.06. △△면에서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함.

□ **관계 법령 등**

- 국가보훈 기본법
 -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 제12조(수당 지급기간 및 시기) 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판단 및 결론**

- 남양주시 ○○○○과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당 신청에 있어 특별히 지자체의 과실은 인정되나 수급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단지 신청주의만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신청인에게 수당을 지급 하더라도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자들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바, 수급자가 통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보훈명예수당을 소급 지급할 것으로 의견 표명함.